

제258회 임시회

2007. 3. 22(목)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연기봉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7년 3월 12일

나. 회부일자 : 2007년 3월 12일

3. 제안이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균형발전 촉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4. 주요내용

가.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하고 특성있는 발전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낙후지역에 대하여 5년 단위로 하는 지역균형발전기 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나. 정기적인 지역간 불균형 실태 조사 및 활용 등(안 6조)

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안 9조)

라.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안 제10조)

(1)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안정적, 지속적, 재정적으로 지원

(2) 도 보통세 징수액의 5퍼센트 이내

마. 균형발전 “연구전담팀” 및 “지역협력단” 구성·운영(안 제15조)

- (1) 공공연구기관에 연구전담팀을 설치하여 권역별 균형발전방안 연구
- (2) 공공연구기관에 지역협력단을 설치하여 평가 및 컨설팅 실시

5. 검토의견

가. 제정취지 및 경과

본 제정조례안은 참여정부 출범이후 ‘균형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의 규정을 근거로, 법에서 정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150만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 내 각 시군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라 하겠음

나. 타 시도의 사례

타 시도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그리고 도 단위에서는 충청남도에 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상 4개 시도의 조례와 우리도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광역시와 도(충남, 충북)는 면적, 인구, 밀집도 등 환경의 차이가 있는 만큼 구별점이 있음

(1) 광역시의 경우

- 뉴타운 건설, 도심·부도심개발 등 시가지 개발사업에 중점 (도시인프라 측면)

(2) 도의 경우(충남, 우리도)

- 상대적 낙후시군에 대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에 중점 (발전잠재력이 있는 소프트산업 육성 측면)

※ 기타 사항은 붙임을 참조

다. 종합의견

이상의 제정취지 및 경과, 타 시도 사례조사 검토결과 등을 종합해볼 때 지역의 균형발전을 바라는 도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한편, 정책적 측면에서도 그 취지가 충분히 인정되는 만큼 본 조례의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임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타 시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 등 우리도의 특색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정책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타 시도의 조례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만, 타 시도의 경우 그 재원에서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이내,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 등 본 조례안의 재원보다 광범위하게 재원을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의 효과성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역주민들의 깊은 관심과 각 시군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본 조례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심의절차를 추가하여 계획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참고자료>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타 시도 사례 조사·검토

□ 조사 및 검토내용

- 16개 광역자치단체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의 유무
- 조례의 세부항목에 대한 비교

□ 조사 및 비교결과

가.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가 있는 시도

- (1) 광역시 : 3개 광역시 (서울, 인천, 부산)
- (2) 道 : 1개 道 (충남)

나. 항목별 비교

- (1) 일반사항 비교

구 분	조례명	조례 제정일	추진체계(계획명)	관련위원회명
우리도 (조례안)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	의회 심의중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5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1년)	(지역혁신협의회)
충 남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7.3.8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5년) 지역균형발전시행계획(1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서 울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조례	2003.3.15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5년) 도시균형발전시책반영(1년)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인 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5.7.25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5년) 도시균형발전시책반영(1년)	도시균형발전위원회
부 산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006.5.10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5년) 도시균형발전시책반영(1년)	도시균형발전위원회

(2) 핵심사항 비교

구 분	지원대상지역 선정 등 계획수립 절차	지원방법상 특색	재 원
우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가 지역간 불균형실태 조사 ○시장·군수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도지사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투자협약제 운영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 ○지역협력단 구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전입금, 기타 수입금 ·차입금
충 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지사가 시군별 발전수준 분석 ○시장·군수 의견수렴 ○위원회 심의 ○도지사 확정 	특별한 규정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균특 지역개발사업계정의 도 배정분의 10%이내 ·도 보통세 징수액의 5%이내 ·국고보조금 ·전입금, 기타수입금, 차입금
서 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구청장의 기초조사 ○위원회 심의 ○시장의 사업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타운지구 또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투융자기금 ○보조금, 차입금
인 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구청장 요청 ○위원회 심의 ○시장의 사업지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구 지정 ○금융지원, 지방세 감면 용적을 완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개발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
부 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구청장 지정 신청 ○위원회 심의 ○시장의 사업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지정 ○지방세 감면, 용적을 완화 ○공공기관 및 시설의 분산 배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통사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기타 차입금, 보조금 등